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청심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청심학원(청심국제중고등학교)의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09.03.01부터 2010.02.28로 종료되는 2009학년도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문건과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청심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청심학원의 2010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10년 4월 8일

학교법인 청심학원

감사 이정복

감사 김순영

피감사자(입회인)

일반직 9급 기은혜

기은혜